

의안번호	제 6이호
의결년월일	2003. 3. 28. (제 104회)

의결사항	
------	--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년월일	2003. 3. 18.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01
------------	-----

제출년월일 : 2003. 3. 18.

제출자 : 고성군수

1. 제안이유

낚시어선업법 제21조의2(시행 2002.11.14)의 개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낚시어선업신고에 관한 신고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징수하도록 개정되어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의 농수산관계란중 낚시어선업신고란 신설(안 별표 1).

3. 참고사항

- 가. 낚시어선업법 제21조의2(수수료)
- 나. 신설대상 수수료 항목별 내역
- 다. 낚시어선업 관련 수수료 타시군 예정요율표
- 라. 입법예고 : 고성군공고 제2003-29호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본 문 : 붙임 참조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농수산관계란증 (41)내수면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란 다음에 낚시어선업신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낚시어선업신고	1건	3,000원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